



교육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試案)

2026. 6.

교 육 부
(대학지원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목표 및 전략	3
III. 세부 추진 계획(안)	5
IV. 향후 일정	12
[붙임] 특성화 대학 선정 지표(안)	13
[참고] 해외 대학 특성화 사례	14

I. 추진 배경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심화

-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충격의 크기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날 전망

※ 학령인구('22~'52) : 750만명 → 424만명(△326만명, 수도권 136만명, 비수도권 190만명)



- 지방대학은 수도권 학생 집중,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 1교당 평균 재정규모('24) : 수도권 3,867억 > 비수도권 2,405억

□ 특성화 전략을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 시급

-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대학 다수가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속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및 경쟁력 악화 우려

※ 학생 1인당 교육비('25) : 수도권 1,986.3만원 > 비수도권 1,665.2만원

일반대학 취업률('24) : 수도권 65.4% > 비수도권 61.2%

- 구조개선 없이 현재 구조 안주 시 '미충원 심화-재정여건 악화-교육 투자 감소-우수인재 유출-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 초래

※ 청년이 판단한 취업 가능성 "높음"('24) : 수도권 26.7%, 비수도권 20.9%

※ 지역내총생산(GRDP)('24) : 수도권 1,352조원(52.8%), 비수도권 1,209조원(47.2%)

👉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지방대학이 특성화 및 구조개선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필요**

【 주요 추진 경과 】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5.9.~'26.2.)

※ (전문가 FGI) 특성화 관련 대학 관계자 인터뷰('25.12.)

- “기존 특성화 사업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문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되, 지역별 대학 간에 빅딜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산 지원, 예컨대 최소 4년 이상의 지원이 있을 때 특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권역별 총괄협의회 의견수렴('26.1.)

- 특성화 대학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성화 분야 확대와 동시에 비특성화 분야를 축소하는 장기적인 정원 계획 필요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확보한 대학 중,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에서 특성화 전략을 구체화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방대 특성화 사업 지원 필요
- 미래 중점육성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한 인건비,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주변 대학과의 빅딜을 지원하는 명예퇴직금 사용 필요

☐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및 특성화 의견수렴('26.3.)

- 강점 분야 중심 학과개편 등 특성화 지원 방향은 지방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바람직하며, 기존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의 구체적인 특성화 계획과 의지를 함께 고려하여 특성화 사업 지원 필요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6.3, '26.6.)

Ⅱ. 목표 및 전략

1

추진 목표

목표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할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추진 전략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 대학 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 학과 재구조화
- 대학 간 비교우위 학과 중심의 역할 및 기능 조정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특성화 전략

- 대학별 특성화 범위 및 방향 자율 설정
-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인프라 집중 투자
- 특성화 분야 핵심성과지표 관리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체 재원 조달 방안 및 성과 환류체계 마련

■ 과감한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 특성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확대 및 규제특례 적용



기반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 간 유기적 연계**

□ 지방대학 체질 개선 및 기반 구축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학생 집중 등에 대응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구조개선 추진
- 대학 내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및 미래 신산업 등 대학별 전략 분야 분야 중심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체질 개선
- 대학 간 중복 투자 방지 및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비교우위 학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구조적 빅딜’ 추진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특성화 전략 수립

- 각 대학은 강점 분야 또는 초광역 산업 수요 등과 연계된 특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차별화된 대학 브랜드로 육성
-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공간, 장비 등 교육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특성화 학과 중심의 교육여건 개선
- 특성화 분야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
- 특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 종료 후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자원 조달 방안 및 성과 환류 체계 마련

□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규제 혁신

- 대학의 우수교원 확보 및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등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대학별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한 규제특례 적용

Ⅲ. 세부 추진 계획(안)

1

사업 개요

- ☐ (사업명)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FIRST)

※ FIRST(Flagship Initiative for Regional Specialized University Transformation)

- ☐ (지원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대육성법」 제17조

- ☐ (지원대상)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

※ 글로벌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기간) 5년('26~'30년, 2+3)

※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하고 중간 평가 이후 지원액 차등

- ☐ (지원규모) '26년 850억원 / 15교 내외 선정

※ 사업관리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관리비에 포함

< '26년 사업 최종 예산 내역 >

- ☐ 대학혁신지원 : 8,191억원

○ (내용) 대학이 자체 여건 및 특성화 전략에 따라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 비수도권은 대학 특성화 및 학과구조 개편 등을 병행한 적정규모화 집중 지원

○ (산출) 일반재정지원 141교 × 평균 57.9억원 = 8,164억원 / 사업관리비 27억원

※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원 포함

- ☐ (지원내용) 재정 지원 및 대학이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요청할 경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예정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 (내용)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제도로,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

- (절차) 지역협업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의 규제특례 신청 → 규제 소관 부처(부서)별 타당성 등 검토 →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해당 지역(대학)에 규제 특례 적용

- (향후) 규제특례제도가 지방대육성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성화 지방 대학은 신속절차 적용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규제특례 신청 가능('26.8.11.~)

2

추진 내용

- (사업신청) 대학 기준으로 사업 신청 ※ 분교 단위 신청 가능
- 컨소시엄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허용하며, 컨소시엄당 참여대학은 최대 3교까지 가능
※ 사업비는 단독 참여대학과 동일 기준으로 배분
- (필수 참여조건) 정원 감축 및 대학 내 학과 재구조화
- (정원 감축)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25 기준)
※ ‘30학년도 감축 실행 방안을 위해 조기 감축 시 가산점 부여
※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 추진 시 정원 감축 비율은 대학별 2%
 - (학과 재구조화)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 중심으로 학과구조 개편

< 대학 내 학과 재구조화 예시 >

‘26학년도	‘27학년도	‘28학년도	‘29학년도	‘30학년도
특성화 분야	특성화 분야	특성화 분야	특성화 분야	특성화 분야
비특성화 분야1	비특성화 분야1	비특성화 분야1	비특성화 분야1	비특성화 분야1
비특성화 분야2	비특성화 분야2	비특성화 분야2	비특성화 분야2	비특성화 분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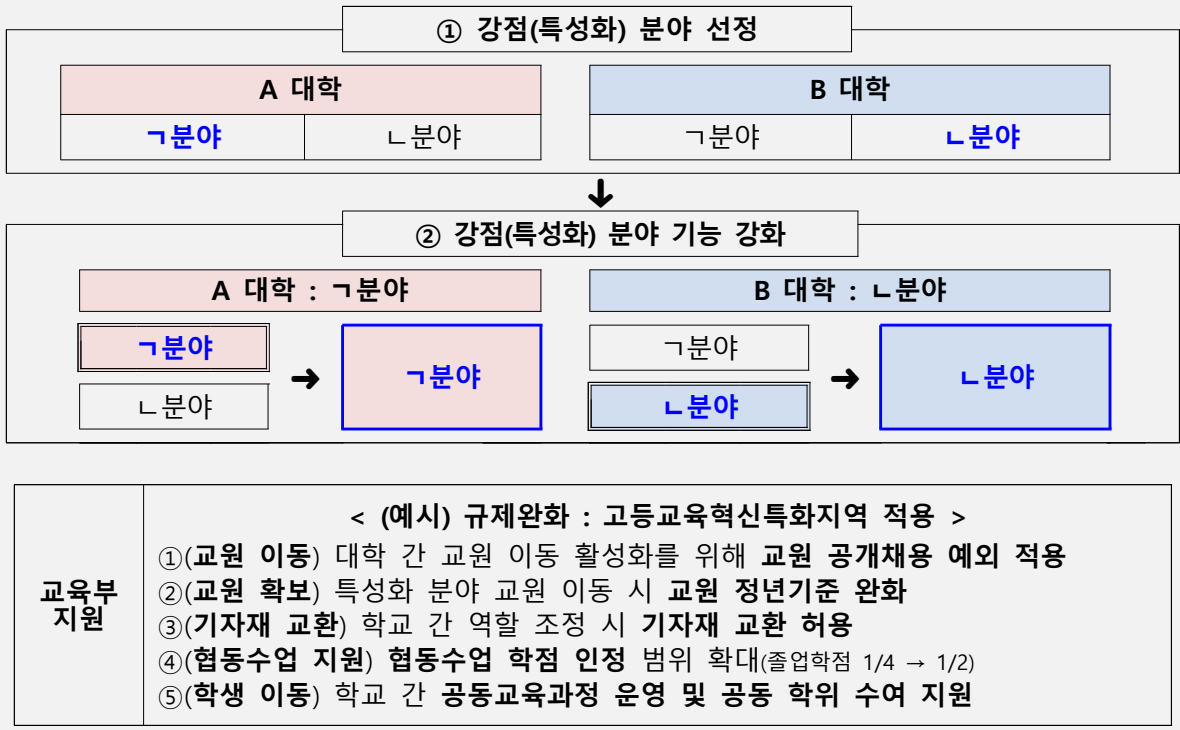
- (특성화 방향)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등 대학 고유의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 추진
- 대학별 ▲ 특성화 분야 선정 사유 ▲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
▲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편·운영 계획 ▲ 교육환경 개선 계획 ▲ 학생 진로·취업 지원 계획 등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사업 지원 시 특성화 계획 포함 필요 내용 >

필수	특성화 예시*
▶ 입학정원 3% 이상 감축(~’30학년도) ▶ 대학 내 학과 구조개편	▶ 대학 간 역할 기능 조정 ▶ 디지털 전환 특성화 ▶ 캠퍼스 특성화 ▶ 대학 자체 특성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외,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차별화 또는 구분하여 신청

<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예시 >



< 대학 간 역할 기능 조정 특성화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 (1안) 정성평가 시 가점 적용 : 평가 등급을 1등급 상향
- (2안) 사업비 추가 배정 : 사업비 배분 시 기준의 120~150%로 배정

3 선정 계획

□ (평가영역) 특성화 계획(75%) +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

※ 두 영역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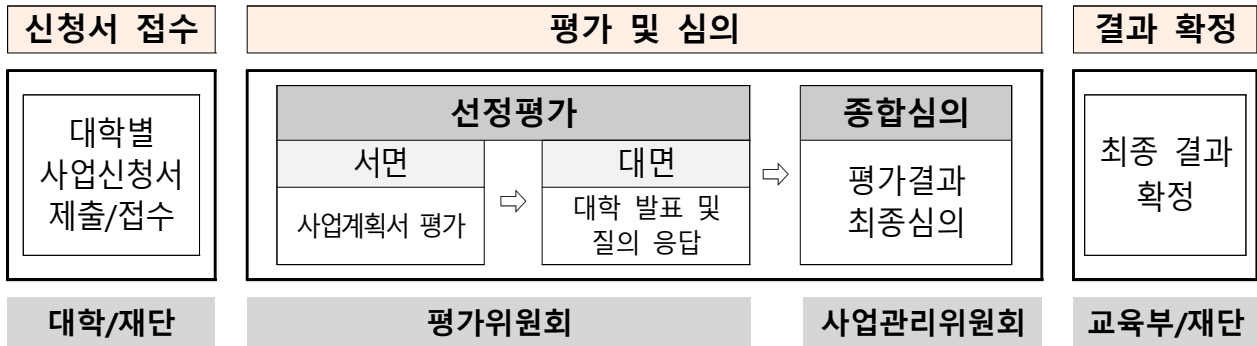
□ (평가방법) 대학별 특성화 계획서 평가점수와 '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지원대학 선정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부정·비리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

○ (특성화 계획) 권역 구분없이 대학별 특성화 계획에 대해 서면·대면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 산출 및 등급 부여(S~B)

※ S등급(95점 이상), A등급(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90점 미만)

< 평가 주요 절차 >



- (대학혁신지원사업 반영) '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영역 중 '교육혁신 성과' 영역의 '25-'26년 평가 등급별 점수* 평균치 반영
 * (S등급) 25점, (A등급) 22.5점, (B등급) 20.0점, (C등급) 17.5점

- (평가지표) ▲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 평가
 ※ 특성화 대학 선정 평가지표는 붙임 참조

- (평가위원회 구성) 대학 운영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면·대면평가 위원 동일 구성

- 평가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 등에 대해서는 상피제 적용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4 사업비 배분

- (사업비 구분) 사업비 총액을 정원 감축 계획(40%) 및 특성화 평가 결과(60%) 사업비로 구분

정원 감축 계획(40%)	+	특성화 평가 결과(60%)	×		=	대학별 지원액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정원 감축 계획 지원비		×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등급 가중치 : S등급(2.0), A등급(1.5), B등급(1.0)

- (정원 감축 계획) '25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하여야 하며 감축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적정규모화 사업 및 글로벌대학 등 타 재정지원사업의 정원 감축 계획과 중복 불가

- (사업비) 340억원

- (감축 인정비율) 정원 감축분 계산 시 '25년 미충원(정원 내) 규모를 초과하는 감축분 및 미충원 감축분을 구분

구분	선제적 감축	미충원분 감축
인정비율(명)	1명 감축 시 1명	1명 감축 시 0.2명

※ 정원 감축 계획 제출 시 미충원분 먼저 전체 감축 후 인원 산정

【예시】 A대학 입학정원 1,000명, '25년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15명일 경우, 필수 감축인원('25년 입학정원의 3%=30명) 충족 기준, 실제 감축 인원과 인정 감축 인원

구분	실제 감축 인원(A)	인정비율(B)	인정 감축 인원(A*B)
선제적 감축	27 (a)	1.0	27 (a)
미충원분 감축	15	0.2	3 (b)
계	42		30 (c)

※ 최소 선제적 감축 인원(a) = 필수 감축인원(c) - 미충원분 감축 인정 인원(b)

☞ '30년까지 미충원 인원 15명 전체 감축(20% 인정(3명)) 및 27명 추가 감축을 통해 총 42명 감축 계획 제출 시 지원 가능

- (사업비 배분) 입학정원 감축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실제 감축인원 수×가중치)

감축 비율	가중치	
	선제적 감축*	미충원분 감축
3%	1.0	0.2
3% 초과 ~ 5% 이하	2.0	
5% 초과	3.0	

* 3% 초과 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선제적 감축에 한하며, 미충원분 감축으로 3% 초과 감축하더라도 가중치 적용 미해당

- (특성화 평가 결과) 대학별 특성화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비) 510억원 ※ 1교당 최대 50억원

- (사업비 배분) 대학별 정원 감축 계획 지원비 및 특성화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가중치*에 따라 사업비 배분

* 평가등급 가중치 : S등급(2.0), A등급(1.5), B등급(1.0)

5

성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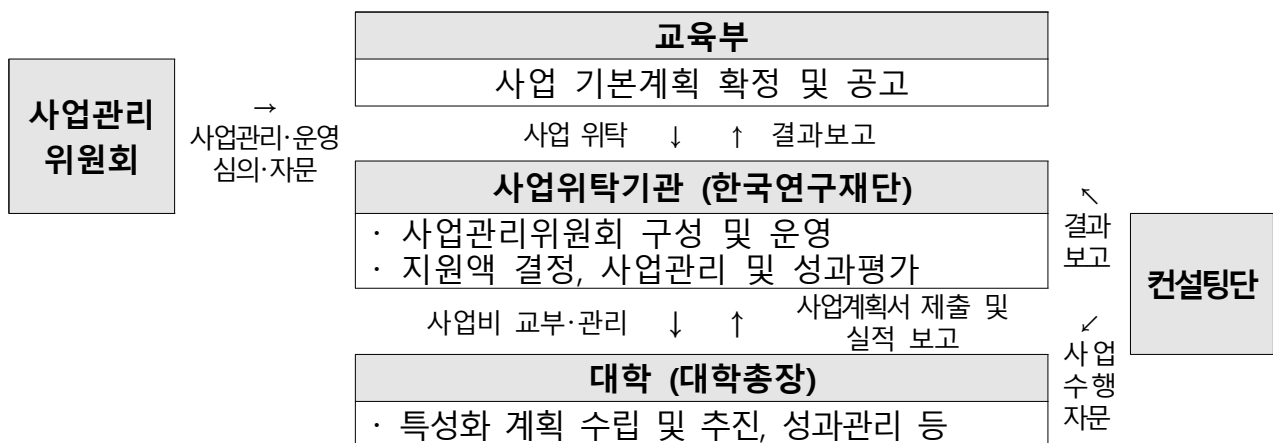
□ 성과 관리

- (성과평가) 사업 관리·운영 실적,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 이행 여부,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 평가
 - (중간평가) '26-'27년 사업 성과·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차평가) 각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 성과·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27년 연차평가 미 실시)
- (핵심성과지표) 사업 목표를 고려하여 공통의 핵심성과지표(특성화 분야 충원율, 중도탈락률, 진학·취업률 등) 설정(세부내용 별도 안내)
 - ※ 자율성과지표는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자율 설정·관리
- (사후관리)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사업기간 5년+사후관리 5년)
 - 정원 감축 실적에 한하여 점검하고, 미이행 시 사업비 환수
 - ※ 정원 감축 계획 대비 미이행 비율에 따라 환수

6

추진 체계 및 사업비 관리

□ 사업 추진 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한국연구재단)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선정평가 시행, 성과평가 실시·분석,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 자문,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 사업계획,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자문
- (대학) 위탁기관과 협약 체결, 특성화 사업계획 수립·추진, 성과관리 등

□ 대학별 사업 관리체계 구축·운영

- (관리체계) 기 운영 중인 대학혁신위원회(위원장: 총장)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에 근거한 투자계획 수립, 자체 성과관리 등 **총괄 관리**
- (전담조직) 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활용하거나 ^{가칭}특성화추진단(단장: 처장급 이상) 구성
 - 연차별 실행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자율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달성 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교부) 사업비는 대학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하여 관리(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구분)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에 각각 교부*하며, 각 대학은 별도 계정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
 -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주관·참여대학간 정한 비율에 따라 교부
- (집행)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집행기준**(비목별 한도 등)에 따라 집행
 - ※ 일부 항목은 대학 자율 집행 검토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정산) 사업비는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이월 범위 별도 안내)
- (결과보고) 대학은 연차별 사업 종료 시 사업비 집행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의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가 판단하여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사업비 삭감, 환수 등에 따른 잔여 사업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다른 지원대학에 배분 가능

※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삭감·환수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비 재지급 가능

-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IV. 향후 일정

- 대학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확정·안내 : ~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8월
- 지원대학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9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영역	지표	배점	세부 내용
비전 및 목표	특성화 목표·전략의 적정성	15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의 정합성 · 특성화 분야 선정의 타당성(강점과의 정합성) · 특성화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추진 내용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20	· 특성화 계획과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정합성 ·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축소·폐지 학과에 대한 대책 포함 · 구조개선 계획 대한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 방안의 구체성(절차적 타당성 확보)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혁신	15	· 특성화를 위한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개편 목표 및 방향,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계획의 혁신성 · 특성화 분야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교육·연구 프 로그램 운영 계획 등 구체성
	학사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10	· 특성화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의 적정성 ※ 학칙 및 각종 규정 제·개정 계획, 학생 모집·충원계획 등 · 우수 교원 및 지원 인력 확보 계획 · 특성화 분야 교육·연구 공간 혁신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개선 계획(특성화 연계성)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 구축	10	· 특성화 분야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원계획의 구체성 ※ 진로·취업 프로그램 우수성, 교원의 적극적 참여 방안, 지자체·산업체 등과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	운영체계 구축·운영	15	· 사업 전담조직 구성·운영 계획의 적정성 · 연차별 예산 편성·집행 계획의 적정성 ※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및 역할 분담 계획, 중복투자 방지 계획 등 ·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 자체 재원 확보 계획 등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15	· 사업 성과 확산 및 환류 계획의 적정성 · 성과관리 조직 구성·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율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성과지표와 특성화 계획과의 연계성, 목표값 설정의 도전성 등
계		100	

① 대학 역할·기능 조정

해외 사례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미국)

- ▶ 대학 간 유사 전공을 조정하여 캠퍼스별 주력 전공 중심으로 특성화
 - ※ 대학(UC) : 샌프란시스코(의학) 데이비스(생명공학) 산타크루즈(항공우주)
 - 주립대(CSU) : 도밍게스힐스(교육), 롱비치(간호), 카운티플러튼(경영)
- ▶ 대학 간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기능별 역할을 명확화
 - ※ 캘리포니아 주 140여개 대학을 기능에 따라 ①대학(UC) : 연구중심·박사 교육,
 - ②주립대(CSU) : 학사·석사 교육, ③커뮤니티칼리지(CCC) : 평생·직업교육으로 구분

② 혼합 모형(학과 재구조화, 디지털 전환, 지역 연계)

해외 사례 :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미국)

- ▶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69개 학과 폐지 및 30개 융합 학과·단과대학을 신설, 학과 간 융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문 플랫폼으로 재구성
 - ※ (예) 사회과학, 인류학, 지리학, 응용수학 등 학과 통합 → 인류진화·사회변화 대학(School of Human Evolution and Social Change)
- ▶ Open AI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 대학 맞춤형 AI 환경을 구축하여 캠퍼스 어디서나 AI 사용이 가능하며, AI 활용 교과과정 및 학생 지원 시스템 도입
 - ※ 신입생 대상 작문 교과(Methods of Inquiry Course) 수업에 생성형 AI 활용 글쓰기, AI 프롬프트 작성, AI 윤리 등을 포함
 - ※ 학생들에게 맞춤형 AI 튜터를 제공하여 질문 응답, 과제 지원, 학습 코칭, 진로 설계 등 지원
- ▶ 지역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여 약 3만명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공학 인재 파이프라인'을 운영
 - ※ (신입생) 공학적 사고방식과 소속감 형성을 위한 집중 적응 프로그램 운영
 - (학부생) 주변 기업(인텔, 애플 등) 소속 엔지니어가 산업체 멘토로 참여하여 실제 공정 데이터나 부품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솔루션 개발
 - (졸업생·재직자) 특정 기업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공학 학위 과정 운영

③ 디지털 전환 특성화

해외 사례 : 시드니 대학교(호주)

- ▶ 2025년부터 수업 및 평가에 생성형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학생·교수 모두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 제공
- ▶ 공학·의학·심리학 등 학습 난이도가 높은 교육과정에 AI를 적용하여, 실험 및 시뮬레이션, 실시간 피드백 등에 활용
- ▶ 공과대학에 생성형 AI를 다루는 정규과목 신설(Applied Generative AI in Engineering)

④ 기타 해외 사례

해외 사례 : 오픈 대학교(영국)

- ▶ 성인학습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대상 평생교육형 원격대학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
- ▶ 전통적인 학년제가 아닌 모듈 단위로 학사 운영(약 9개월 내외, 30~60학점), 필요한 모듈을 선택해 학점을 누적하여, 총 360학점 이수 시 학사학위 수여
- ▶ 학습 시작 시기(2월·4월·10월) 및 필요한 만큼 연간 수강량 조절이 가능하여, 개인 상황 및 속도에 맞춘 학습이 가능

해외 사례 : 아타바스카 대학교(캐나다)

- ▶ 온라인 기반 수업 운영으로 학생이 원하는 시점에 매월 수강 시작이 가능하며, 학습자 스스로 수강 및 평가 일정을 자유롭게 관리
- ▶ 학과에서 설계한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자의 수강목표, 직무 경력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목 선택(학사학위 요건 120학점 중 약 60학점 자유 설계 가능)
※ (예) 교육행정 직무 : 교육학+통계학+정책학 등 타 전공 과목 융합
- ▶ 과거 취득 학점뿐 아니라 재직경력, 업무 성과, 전문자격증 등 전공과 관련된 성과를 포트폴리오 평가 또는 시험을 거쳐 폭 넓게 학점으로 인정